

1. 개정이유

현재의 문화·자연·무형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·개편하는 내용의 「국가유산기본법」이 일부개정 진행 중임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명예보유자 인정심사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무형유산위원회 명칭 변경 (안 제2조)

-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 명을 「국가유산법」 개정에서
따라 “무형유산위원회”에서 “국가유산위원회”로 변경

나. 명예보유자 신청 사항 정비 (별지 제1호의2서식)

- 무형유산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보유자 인정요건을 충분히
인정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신청 서식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관계부처 등과 협의 예정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

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「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에 따른 무형유산위원회(이하”를 “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(이하”로, “거쳐 법 제12조”를 “거쳐 「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2조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국가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

신청인	구분	☐ 보유자 ☐ 전승교육사		
	종목			
	성명		생년월일	
	주소			
신청 사유				
전승 활동 사항				

「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국가유산청장 귀하

첨부서류	신청인의 전승활동 사항에 관한 입증자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

작성방법

"전승활동사항"란에는 신청인의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 인정 이후 주요한 전승활동 실적을 작성하되, 작성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을 위한 조사계획의 수립) ① 국가유산청장은 「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에 따른 무형유산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및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, 보유단체의 인정을 위한 조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. ② (생 략)	제2조(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을 위한 조사계획의 수립) ① -----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(이하 ----- ----- 거쳐 「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2조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